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남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의무화 및 비용 지원〉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503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의무화 및 비용 지원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Ⅲ. 검토의견

1.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의무화 및 비용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 ③ (생략)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u>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단서 신설>	④ ----- ----- ----- <u>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u>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u>조사</u>	⑤ ----- <u>농</u>

현행	개정안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건강검진의 시기·항목</u>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제14조의 규정으로도 전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와 건강검진에 따른 재정 지원이 가능하므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14조의 규정으로도 여성 및 남성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전체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기획재정부

제21대국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농어업인 전체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및 비용지원 의무화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다.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의원, 제2114503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전체회의에 상정(2022. 04. 26.)되었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

라. 검토의견

농업은 타 직종보다 유병률이 높아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UN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3대 위험사업(광업·건설업·농림어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를 권고¹⁾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광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이 시행 중²⁾이나 농어업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1) 농업에서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협약(Convention No. 184)(2001)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농업인은 비농업인에 비해 다빈도 질환의 연령표준화 유병율³⁾과 질병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이 높음(2020년 기준).

또한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일반인에 비해 18~20%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20년 기준).

【다빈도 질환 연령표준화 유병률】

(단위: %, 2020년 기준, 40세 이상)

질환 분류*	농업인			비농업인			비율	
	남성(A)	여성(B)	전체	남성(C)	여성(D)	전체	(A/C) ×100	(B/D) ×100
정신 및 행동 장애	17.0	28.2	21.1	15.4	25.7	19.5	110.4	109.7
신경계통질환	19.9	29.4	23.1	18.1	27.1	21.5	109.9	108.5
순환계통질환	44.8	48.0	46.4	44.8	45.4	45.6	100.0	105.7
호흡계통질환	43.1	53.7	46.4	43.0	53.0	46.4	100.2	101.3
소화계통질환	72.3	79.4	74.4	72.1	79.2	74.5	100.3	100.3
피부피하조직질환	34.9	42.2	37.1	34.2	39.9	36.0	102.0	105.8
근골격계 질환	54.4	68.3	58.9	50.6	65.5	55.8	107.5	104.3
손상, 중독 및 외인	34.0	36.8	34.8	30.0	34.5	31.5	113.3	10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2024.8.16.제출

3) 전체 인구 중 특정한 장애나 질병 또는 심리신체적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분율로서, 어느 시점 또는 어느 기간에 해당 장애나 질병, 심리신체적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누어 계산

【질병 의료비용 본인부담금】

(단위: 천원, 2020년 기준, 40세이상)

질환 분류*	농업인			비농업인			비율	
	남성(A)	여성(B)	전체	남성(C)	여성(D)	전체	(A/C) ×100	(B/D) ×100
정신 및 행동 장애**	281	454	365	255	382	318	110.2	118.8
신경계통질환	288	313	299	283	292	287	101.8	107.2
순환계통질환	291	414	337	253	363	293	115.0	114.0
호흡계통질환	142	136	140	114	108	111	124.6	125.9
소화계통질환	215	229	220	193	206	198	111.4	111.2
피부피하조직질환	61	69	64	56	62	58	108.9	111.3
근골격계 질환	174	283	217	155	243	192	112.3	116.5
손상, 중독 및 외인	167	243	194	145	209	170	115.2	116.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2024.8.16.제출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단위: %, 40세 이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업인	남성	56.1	57.3	58.8	60.2	57.5	50.0
	여성	60.4	60.4	61.2	62.0	59.1	50.7
일반인	남성	74.2	76.0	77.0	76.1	77.1	70.6
	여성	72.6	74.8	75.4	74.4	75.3	68.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2024.8.16.제출

이에,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여 유해요인 노출정도가 보다 높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18년 12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음.

※ 관련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특수건강검진 준비검진 실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및 사업추진 계획 마련 등의 사유로 4년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여성농어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반면, 남성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현재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농어업인 건강검진 현황】

구분	농어업인		비고
	여성	남성	
국가의 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의무	임의	
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실시시기	'22~'23 시범사업 '24~ 본사업	미 실시	

이에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농어업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농어업인 인구 및 건강검진대상 인구현황】

(단위: 천명, '23년 7월기준)

구분	농업인		어업인*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인구	1,172	1,383	43	55
건강검진 대상인구 ⁴⁾	601	750	33	4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2024.8.16.제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2024.8.23.제출

- 4)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과 동일 기준 적용
- 농업인 51세~71세, 어업인 51세 이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종사자)으로 한정

다만, 전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22년과 '23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5)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결정('23. 8.)되어 본사업화 되었음.

이에 '24년도에는 약 3만명분의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4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인원인 15만명의 20%에 그치는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향후 실질적 의무검진화를 위해 그 대상과 예산을 확대할 예정에 있음.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편성 내역]

- 총 예산: 4,300백만원
 - 검진비: 3,300백만원 = 3만명* × 220천원× 50%(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검진 관리비: 1,000백만원
- ※ 총 검진대상인원: 15만명
 - 농어업경영체 등록 51세~70세 여성농업인 60만명×0.5(격년수검)×0.5(수검률 50%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2024.8.16.제출

-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한편, 개정안에 따라 남성농어업인⁶⁾ 건강검진을 의무화할 경우, 자부담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향후 5년간 2,206억원, 연평균 4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 바,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화 확대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총사업비	473	481	489	498	507	2,448	490
국비+지방비소계	425	434	441	449	457	2,206	441
- 국비(50%)	245	250	254	258	263	1,270	254
- 지방비(40%)	180	184	187	191	194	936	187
- 자부담(10%)	45	46	47	48	49	234	47

※ 자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 검진대상: 남성농업인 51세~71세(76만명 수준), 남성어업인 51세 이상(4.4만명 수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종사자)으로 한정

※ 검진수가, 검진주기, 국비, 지방비, 자부담율 등: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동일

※ 수검률 50% 추정

한편,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사례와 같이 재정소요 및 예산사정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① 51세~71세의 남성농업인, 51세 이상의 남성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종사자)을 대상으로 하되, ② 농·어업인 중복을 조정할 경우 ③ 남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수검대상자는 남성농업인은 76만명수준, 남성어업인은 4.4만명 수준이 될것으로 추산(출처: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 (개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 (필요성) 농업은 타직종 보다 유병률이 높고, 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유해요인 노출정도가 심각하여 건강보호 지원 필요
 - UN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농업을 3대 위험사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를 권고
 - 여성농업인은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업에 주로 종사하여 유해요인 노출정도가 남성농업인보다 높아 우선지원 필요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 및 국정과제 반영, 시범사업(‘22~’23년) 추진 후 본사업 시행
 - 「여성농어업인육성법」(‘18.12월) 및 시행령(‘19.6월) 개정, 법적근거 마련
 - 국정과제(70번)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에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반영
 - 여성농업인 특화 국가건강검진 도입 및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19),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방안 연구(‘21)를 통해 검진항목 및 추진방안 마련
- (예산) ‘24년 검진비 및 검진 관리비 4,300백만원
 - 검진비: 3,300백만원 = 3만명* × 220천원× 50%(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검진 관리비: 1,000백만원

참고 2

2024년도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지침 개요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상자	51~70세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 거주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검진 신청 시·군·구에 거주
검사주기	2년마다(격년제) (홀짝수년 출생자 대상)	
검진항목	• 농약중독감시(농약) • 근골격계질환(중량물, 작업환경) • 골절위험도(낙상) • 심혈관계질환(온열, 스트레스) • 폐질환(분진) • 예방교육 등	• 근골격계질환(신체부담작업, 중량물취급) • 골절위험(낙상) • 심혈관계질환(온열, 스트레스) • 난청(소음) • 예방교육 등
건강검진 단가	• 51~70세: 220천원(54세 및 66세 제외) • 54세 및 66세: 175천원(골밀도검사 제외 비용)	• 51세 이상: 200천원(54세 및 66세 제외) • 54세 및 66세: 162천원
검진비 분담률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50% : 40% : 10%	
2024년도 예산 (국비 기준)	43억원 (검진비용 3,300백만원, 검진관리비 1,000백만원)	16억 8,700만원 (검진비용 1,163백만원, 검진관리비(행정비) 524백만원)

※ 자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